범죄의 예방에 관한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반동성

손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죠아사상 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제9권 중 보판 500폐지)

범죄의 예방에 관한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반동성을 정확히 밝혀내는것은 자본주의형사학의 비과학성과 허위성, 기만성을 옳바로 해명하고 자본주의형사법제도의 반인민적, 반동적본질을 명백히 발가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서면서 부르죠아대변가들은 《법앞에서의 만인의 평등》과 《인도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제창하면서 부르죠아지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범죄예방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다.

범죄예방에 관한 부르죠아형법리론은 범죄의 발생근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서로 달리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상리론적, 계급적기초에 있어서 철두철미 부르죠아지들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대변하고 형법분야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현하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전개된 리론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의 예방에 관한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부르죠 아국가의 형벌을 적용하면 능히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만적인 리론이라는데 있다.

이것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규정하고 죄를 범한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면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서 표현된다.

이 견해는 봉건사회말기에 중세기적인 형벌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봉건국가의 형 사정책을 부정하면서 부르죠아통치제도를 유지하려는 신흥부르죠아지의 요구와 리 익을 대변하여 제창되였다.

공공연한 계급적, 신분적차별에 기초한 봉건국가에서는 계급적, 신분적차별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 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형벌이 적용되 였다.

더우기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법에도 없는 《죄》를 만 들어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는것으로써 저 들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 하여 봉건제도와 봉건형법을 반대하는 인 민대중의 원한과 반항은 매우 컸다.

인민대중의 힘을 리용하여 정권을 가로 챈 신흥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한 부 르죠아형법리론가들은 《죄형법정주의》를 제창하면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미리 규 정하고 그를 적용하면 범죄를 막을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대변자들은 범죄의 근원을 외곡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 본질을 가리우려고 하고있다. 이자들은 사람은 불쾌를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리해의 균형에서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미리 규정하고 범죄를 감행한자에게 즉시 법이 정한 형벌을 가하면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것으로 하여 느끼는 커다란 불쾌를 피하기 위하여 범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다시말하면 형벌은 범죄의 필연적결과 이고 고통을 주는 요인이며 만일 사람들 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의 고통을 받는 다는것을 미리 알고 그 고통이 범죄로 인 하여 얻게 되는 리익보다 크다는것을 감 수하면 이런 감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압력을 형성하며 범죄의 싹을 억제시킨다 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부르죠아국가의 형벌이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독재의 폭력적수 단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반동적인 견 해이다.

계급사회에서 형벌은 철저히 계급적성 격을 띤다.

자본주의국가형벌은 국가주권을 틀어쥔 부르죠아지들의 리익과 요구를 대변하여 근 로인민대중에 대한 계급적지배를 실현하 는 도구이며 그의 사명은 철저히 근로인 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실현에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와 형벌을 미리 규정하면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인민대중에게 형사적탄압을 가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는 기만적인 리론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범죄의 예방에 관한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람을 생물학 적존재로 보면서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 대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반면에 죄를 범한 착취계급과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리론이라는데 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사회적환경속에서 어떤 교양을 받으며자라는가에 귀착되게 된다.

그러나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대변자들은 범죄는 사람의 체질이나 기질, 유전에 의 하여 발생한다고 하면서 《병리생리학적예 방책》과 《유전적인 병적후손의 예방책》을 주장하고있다.

범죄의 근원을 생리적요인에서 찾는 이러한 궤변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미화분식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말살하기 위한것이다.

우선《병리생리학적예방책》을 주장하는 데서 표현된다.

이 리론은 범죄자로 될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 즉 생리학적병을 가지고있는자를 비롯한 개별적사람들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면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고 하는 리론이다.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대변자들은 범죄자는 일정한 정신적 및 신체적표장에 의하여 식별되는 하나의 특별한 인종으로서 사회적환경의 여하에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범죄에 빠질 운명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런 원인으로 범죄자는 《개선》될수 없기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야수적인 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고있다.

현시기 이에 대한 견해는 자본주의사회 자체안에서도 부정되는 반동적인 견해로 되 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아 직도 이 리론을 주장하면서 그 예방책으 로서의 거세가 도입되고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외곡하고 범죄자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는 방법 으로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는 반동적인 궤 변이다.

또한 《유전적인 병적후손의 예방책》을 주장하는데서 표현된다.

이 리론은 범죄를 감행하는 《인종》, 《종자》가 따로 있고 그것이 《격세유전》되기때문에 범죄행위를 감행하기 전에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범죄를 감행하였을 경우 《단종》이나 《거세》를 하면 《격세유전》을 막고 범죄를 방지할수 있다고 하는 리론이다.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대변자들은 범죄자로 되는 인종, 부류가 있으므로 그 종자를 없애거나 류형, 거세, 단종을 적용할 때만이 범죄를 줄이고 없앨수 있는듯이 설교하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범죄를 범할수 있는 인종, 부류를 없애는것과 함께 범죄자들에게 사형, 종신금고형, 거세, 류형, 단종을 적용하고있다. 이자들이 말하는 《범죄자》란 부르죠아제도를 반대하여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DNA분석론에 의한 범죄 예방책》을 주장하는데서 표현된다.

각종 범죄가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는 범죄근절궤변들이 적지 않다. 그가운데는 《DNA분석에 의한 범죄예방책》이라는 궤변도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DNA(대핵산)속에들어있는 유전정보가운데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유전인자》들을 알아낸 다음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있는 《잠정적범죄자》들을 찾아내여 감시밑에 두는 방법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것이다.

사람의 DNA속에 유전인자가 있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는 유전과는 인연이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성행하는 각종 범죄는 DNA속에 들어있는 유전인자, 유전법칙의 산물이 아니라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DNA분석론》을 떠들며 그 무슨 《유전인자》의 분석에 기초한 《범죄근절계획》을 설교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악성종양》인 범죄의예방에 관한 기만적인 궤변이다.

범죄의 예방에 관한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적환경의 개 선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본주의사회가 마 치도 범죄자를 교양개조하여 선량한 사람 으로 재생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인 듯이 미화분식하는 리론이라는데 있다.

이것은 우선 부르죠아사회에서 이른바 《옳바른 사회적시책》을 실시하면 범죄를 미리막을수 있다고 하는데서 표현된다.

이 리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마약, 실업 과 빈궁, 알콜, 도박기구, 폭력영화, 색정 문화 등 범죄의 발생근원으로 될수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리론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을 실업과 빈

궁에로 내몰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 비시키는 마약, 알콜과 같은 각종 수단을 만 들어내고있으며 금권을 가지고 출판물, TV 를 비롯한 선전수단을 장악하고 색정적이 며 반동적인 문화를 강요하는 사회이다. 자 본주의사회에서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 식과 패륜패덕, 가정의 파탄, 색정적이며 폭 력적인 영화와 출판물이 성행하는것은 필 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주성 을 지향하는 인민대중 특히 자라나는 새 세 대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켜 자본주 의제도를 반대하여 나서지 못하게 하며 저 들의 반동적통치에 순종하는 리용물로 만 들기 위하여 부르죠아반동들이 의도적으 로 조장류포시킨 결과이다. 이것은 자본주 의사회에서만 있게 되는 실업과 빈궁과 함 께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어 범죄 의 길로 떠밀어넣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제도 그자체를 뒤집 어엎기 전에는 나날이 늘어나는 범죄를 막 을수도 줄일수도 없다.

이것은 또한 범죄적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대책》이나 《사회적보호대책》을 세워놓으면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주장하 는데서 표현된다.

이 리론은 형벌을 행위자의 반사회적성 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반사 회적성격을 가진자에게 보안처분을 주면 범 죄자를 개조하여 재범을 막을수 있다고 주 장하는 리론이다.

부르죠아형법리론의 대변자들은 범죄적경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무직자와 《반사회적조직》성원으로 구분하고 이런 류의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행위수행에는 관계없이 《안전대책》이나 《사회적보호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하고있다.

그러한 대책들로 《반사회적성격의 소유 자》들에게 행위가 없어도 보안처분을 적 용하거나 자유를 미리 박탈하는것, 형기를 마친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것,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처벌의 기간과 문제해결의 권한을 감옥행정기관에 주고 《예방구금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것 등을 들고나오고있다.

이 궤변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른바 범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사회적보호대책》이라는 허울을 쓰고 부르죠아제도를 반대하여나선 근로인민들, 생존의 권리와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반사회적성격의 소유자》로 몰아 탄압, 학살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사회에서 범죄를 방지하려면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범죄발생의 기본바탕인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범죄의 방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사 회의 반동적본질과 범죄예방에 대한 그릇 된 리론으로 하여 범죄가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국가는 범죄를 막을수 있 는 능력을 상실하고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서는 거액의 돈을 범죄를 막는 사업에 쓰도록 결정하고 경찰의 확대와 감옥건설에 투자하고있으며 사형적용범위를 넓히고있다. 이것은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근원적문제를 피하고 다만 범죄예방의 일부 방법과 대책들을 론하는것으로서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을 감추고 미화하려는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 란무하는 범죄를 없애 려면 그 온상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자 본주의사회제도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는 온갖 범죄가 살판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을 잘 알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